

연/대/회/의 자 료 집

1998. 8.

연대회의 자료집 기획팀

생각

목 차

연/대/회/의 자 료 집

연대회의의 성격과 특성 / 1

성공회의 개념

성공회 근절을 위한 학칙의 필요성 / 18

성공회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 / 20

학내 성공회 근절을 위한 학칙(가안) / 23

학내 성공회 근절을 위한 학칙 1차가안에 대하여 / 26

부록 - 성공회관련 연대회의주최 1차결정의 결론과 발원 모습 / 32

- 결사권 (학내내 성공회에 대한 규정) / 33

성공회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에 관하여 / 38

성공회 사례 - 온비전 성공회 / 40

1998. 8.

학칙제정운동 사례 - 서울시립대의 경우 / 49

성공회 - 서울시립대학교 성공회 해방대책위원회의 규정(안) / 54

성공회 근절을 위한 운동에 대한 조망 / 55

연대회의 자료집 기획팀

목 차

연대회의의 체계와 위상에 관하여 / 5

성폭력의 개념부분 / 7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필요성 / 18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 / 20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가안) / 2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1차가안에 대하여 / 26

부록 - 성폭력관련 연대회의주최 1차공청회 질문과 답변 모음 / 32

- 동아대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규정> / 35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에 관하여 / 38

성폭력 사례 - 온라인 성폭력 / 40

학칙제정운동 사례 - 서울시립대의 경우 / 49

별첨부록 -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규정(안) / 54

-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대한 조항 / 56

연대회의의 체계와 위상에 관하여

대중가요 속의 '사랑'이란 주제처럼 '연대'라는 것도 논 의 속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단골메뉴가 되지 않았나 한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라는 명칭보다도 '연대회의'란 명칭에 더 익숙해진 우리들은 쉽게 얘기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연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였다.

각 학교 내부 상황이나 방법적 사고의 차이 등으로 학내 여성운동 단위의 모습(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여성모임 연대, 여성 행동위, 동아리)들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단위들이었고, 정보와 힘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학내에서 하는 활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 대중화되지도 세력화 되지도 못한 채 운동 인자의 힘만 소진시키거나 크게는 운동 단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필요들에 의해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일어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의 '연대회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성폭력'이란 주제로 모인 연대체가 탄생된 것이다. 연대회의가 서울 경기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전북지역에서도 여성연대회의가 발족된 것을 볼 때 여성운동 단위들의 연대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단위의 튼튼한 기반 마련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기존의 대표자 중심의 회의 방식을 지양하고 원탁을 지향한다. 우리는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경직된 예들을 많이 보아왔다. 자치기구인 학생회는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답습하면서 어느 정도는 병폐를 만들어 내었다. 연대회의가 원작을 지향한다는 것은 권력 중심적 구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주의'의 실현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고, 여성주의적 방식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향점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다. 또한 단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치단위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 단위의 대표라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공간이다.

연대회의의 일차적인 목적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별 대응과 사건 중심적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만, 보다 주된 목적은 '하나된' 큰 목소리로 여성운동의 세력을 형성하고 각 학교의 사업과 여타 다른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여성운동의 흐름을 읽어내고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이다.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이 '여학생 운동' 관점에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관점으로 전환하던 근래 몇 년 동안 각 단위들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대회의는 학내 여성 운동의 세력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여러 학교의 공동 대응으로 언론의 주목을 획득할 수 있었고, 큰 세력이 됨으로 해서 사회의 여성에 대한 기존의 담론에 대응하는 담론을 펼칠 수 있었다.

현재 연대회의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원탁을 지향하는 연대회의는 구성원 모두가 대표

자이고 책임자이다. 물론 공동의 책임이라는 불분명함으로 인해 회의가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급증하는 온라인 성폭력이나 메세 모집기 등 때때로 빠른 대응을 보여야 할 때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험적 회의 방식의 정착 과정에 있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대회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개인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다. 또한 강제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짐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효율성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창조성과 적극성이라는 플러스 요인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대회의와 각 단위와의 소통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도 있다. 연대라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학내 여성운동의 대표가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정보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학교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연대회의를 통하는 것이 예처럼 되어버렸다. 연대회의에서는 성폭력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내기란 불가능하다. '미인대회 반대'같은 일들은 대체 회의기구가 없어서 이루어 낼 수 없었던 사업으로 안타까움이 남는다.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 개념화의 정치성

성폭력에 관한 문제제기가 대학 내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지난 몇 년을 보내며,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남녀권력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며 동시에 이를 공공히 하는 기제임이 어느정도 널리 인식되었다. 이제 단순히 성기중심적인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생각하는 사고는 적어도 외견상 지양되어야 할 바로 이야기 되고있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의 인식이 차츰 대중적 기반을 얻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히 과장된 말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사고틀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담론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 아직 그 잔재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은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며, 성폭력에 관한 개념은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기중심적으로 분리되어 사고되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담론은 성적 자율권과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성폭력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지배세력의 사고와 느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종위를 갖춘 일반 평균인의 관점'이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관점임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임을 규정하는 명명권은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게 전유되어 왔고 우리는 그것이 성폭력이나 아니냐는 개념과 지칭의 문제에서부터 그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어떤 사실을 개념화하는 문제는 곧 그 사실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쟁점화 할 것이며, 어떻게 변화를 유도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개념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화의 문제는 단순한 현상의 정의 그 이상이다. 개념화는 곧 권력과 정치가 작동하는 현장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폭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성폭력을 이해하고 사회문제화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설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

이제 성폭력 담론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조선 시대와 같이 성폭력이란 개념 자체가 부재했었을 때 우리는 그 사회의 지식체계, 개념, 언어가 지배체계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여성의 경험에 기반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명명하는 것으로 정치성을 획득해 나갈 때,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개념화하고 문제제기 할 때 지금의 권력구도를 바꾸려는 출발이 가능할 것이다.

1) '성폭력 개념화의 정치성' 김현정(한국여성의전화연합 교육부장). 서울대 성폭력 학적 공청회 자료집. 1998.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의 침해이다. 특히 그것이 대학이라는 지형에서 사고될 때 우리는 교육권이라는 부분에 착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계는 성폭력에 더해져 대학을 사회의 권력관계의 연장으로 가져간다. 교수가 학생에게 갖는 권위와 위계, 교직원에게 갖는 권위, 대학 구성상의 성비 불균형에 의한 남녀간 불평등과 긴장 등은 대학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 요소로서 작용한다. 특히 대학이 학문적 성과를 얻고, 사회 진출을 위한 교두보임을 생각할 때, 단지 성폭력 자체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의욕 저하나 능력개발의 제약 등은 또 다른 형태의 성폭력으로 계속 여성을 배제시키게 된다. 여성의 동등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더 나아가 차별의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공간에서의 성폭력은 교육권의 침해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두려움,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 능력개발 제약까지 간접적 성폭력으로 사고되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대학사회에서의 성폭력의 피해는 제 2, 제 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꼭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사회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미칠 수 있는 대사회적 영향 역시 기대될 수 있다. 흔히 진보적 공간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성폭력에 대한 성기중심적, 남성중심적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피해자 중심의 담론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인권 확보를 위해, 대학사회 구성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대안적 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II. 성폭력 개념

1. 무엇이 성폭력인가?

- 성폭력으로 규정지를 근거

: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조보호가 아닌 '성적자율권'의 문제 명시

성폭력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이 구현된다는 관점에서 포착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이나 가문 등의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는 관념과 관련된다. 여성의 성은 역사적으로 남성지배권력과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기반으로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더욱 억압된다.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의 성이 강조되고 혈통의 순수성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부계와 부권을 토대로 한 가족관계는 남녀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게 한다. 성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결국 정조-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남성의 성적 소유권을 지켜준다는 것이고, 성폭력 피해여성도

이와같은 정조-순결 이데올로기에 다시 한번 피해를 입게 된다.

아직도 성폭력담론 속에서는 여성의 몸이 정조와 재생산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이 여성 자신의 것이며, 그녀의 삶과 정체성의 터전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정조가 아니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성폭력에 대한 해석이 남성의 소유물로 존재하는 여성의 성에 대한 침해로 읽혀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으로 구성되어진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의 해체가 요구된다.

성폭력이란 결국 타자의 몸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자율권(자기 몸에 대한 권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여성의 여성권확보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 성적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운동과제인 것이다.

- Kelly의 연속선의 개념

① 양분법적 성폭력 분리론에 대한 반대

일반적으로 성폭력 행위들은 각각 분리된 것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 유형 안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적 괴롭힘 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는 데 이것은 각각 서로 다르고 분리된 행위로 개념화된다. 성폭력을 양분법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각각의 성폭력 형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않는지를 따지는 질적인 접근만을 할 뿐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강간은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남성 성기가 여성성기에 삽입되었는가 아닌가의 양분법적 접근을 취한다.²⁾ 사실 성폭력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행동들의 연속적 총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충족여부만을 따지는 양분법적 인식은 성폭력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을 배제시키고 폭력속에 노출시키게 되며 또한 각각의 질적인 구분을 시도하여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 짓는다. 성폭력은 여성이 경험하는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력이며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성폭력 인식은 각각이 분리되며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으로 구분 지어진다. 이러한 분리는 강간과 같은 특정 형태의 극단적인 형태에 성폭력을 집중시키게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여성이, 좀더 정확하게 말해 여성의 경험이 얼마만큼 배제되어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 '객관적'으로 성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이야기되어질 때의 객관은 여성의 주관과 사고가 배제된 객관을 위장한 남성의 주관일 뿐이다. 성폭력은 성폭력일 뿐이다.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양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대해 차별 없이 반대한다. 성폭력의 정도를 임의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처벌 방식을 도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우리의 관심대상이 아니며, 그것은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일

2)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p203-204 나남, 1993.

뿐이다.³⁾

② 연속선 개념

성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모두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모두 각각 분리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분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폭력'이라는 일반적 현상의 일부로 보기 위해 '성폭력 연속선'(continuum of sexual violence)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성폭력 연속선 개념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성폭력 사이에 연결을 탐색하는 것과 대부분의 여성은 생애중 성폭력의 경험을 한다는 생각을 탐구하고자 한다.

성폭력 연속선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많은 다른 사건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공통적 성격은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대, 강요 및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여성의 경험을 성폭력의 범주 안에 위치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 연속선 개념은 심각도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성폭력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형태로부터 간단하게 해석될 수가 없다. 성적추근담과 같이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보다 강간이 더 많이 여성에게 영향을 주며,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규정하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 성폭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심각도에 의해 위계서열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며, 모든 형태의 성폭력은 심각하다. 연속선의 '더 또는 덜'이라는 측면은 심각도가 아닌 발생률만을 가르키는 것이다. 발생의 연속선은 가장 흔한 경험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경험으로 연결되며, 경험과 상호 연결되어 적용된다.

성폭력의 연속선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경험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행의 형태에 주의를 끌며, 보다 흔한 일상적 남성행동과 극단적 성폭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예시해 준다. 언어로 하는 강제 및 폭력의 위협과 함께 신체적 힘의 사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성폭력을 연속선 개념에서 탐색할 수 있다.

-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피해자 주관

① 동의의 문제

여성의 경험에 있어서 성폭력은 동의 아니면 성폭력의 양자택일로 항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남녀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성이 기반한 관계는 불평등 할 수밖에 없으며, 여성은 성적대상으로 정의된다.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지배의 성애화는 가부장제의 유지기제이며, 이는 강간이나 매춘, 포르노 같은 극단적이고 일탈적인 형태의 성애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일상적 성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의 성이 성별위계관계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폭력에 의한 또는 강요된 성이 여성의 통상적 경험이며, 강간과 같이 남성도 법도 성폭력으로 규정한 관계 뿐만 아니라 동의라는 외견상 동일한 형식을 가진 관계에서도 성폭력은 존재한다.

흔히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판단 기준으로 피해자의 동의 유무가 사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성폭력

3) 지음. Critic. 공간이음. 1998.

이 피해자의 동의여부가 아닌, 저항여부로 판별되는 상황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규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 틀림없다.⁴⁾ 하지만 우리가 '동의'라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이는 남녀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속에서 동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arry (1995)는 동의의 여부로 성폭력을 규정하는 것은 남성의 성적 권력을 가부장적 억압체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동의라는 단어는 어떻게 섹스가 이용되고 경험되고 권력으로 구성되는지를 고찰하지 않으며, 사회구조적 차원의 성적 착취를 개인적 경험의 문제로 초점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지배가 규범화되고 성애화된 성문화에서 동의는 종속적 지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⁵⁾

Kelly에 따르면 여성의 이성애적 성관계의 경험은 자율적 선택, 압력, 강제 그리고 힘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이것은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대립된 틀이 아니라 경험의 연속선상의 바람직한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극단으로 보도록 제시해준다. Bart는 이성애적 성을 ①동의적 성(쌍방이 모두 똑같이 원하는 경우), ②이타적 성(여성이 거절할 경우 남성에게 미안하게 느끼거나 죄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경우), ③순응적 성(안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함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나빠서 하는 경우), ④강간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시했다. Kelly는 이에 동조하며, 동의적 성과 강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없고 압력, 위협, 강제, 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속선의 개념은 여성이 성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을 때 느끼는 학대의 느낌을 타당화시켜주며 여성은 당시에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경험을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⁶⁾ 이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이트 강간과 같은 형태의, 동의라는 형식을 갖춘 관계에 있어서 성폭력이 존재함과 그것을 성폭력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해 준다. Bart의 연속선 개념을 차용하여 동의라는 경험을 선택에서 압력, 위협, 강제, 힘의 영향을 받는 자발적 동의, 이타적 동의, 순응적 동의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 '동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 것은 '자발적 동의'이며, '이타적 동의'와 '순응적 동의'의 경우 그것이 외견상 '자발적 동의'와 동일하게 '동의'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동의'로 간주되어질 수 없으며, 성폭력으로 규정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가 동의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남녀간의 권력 불균형적 조건에 영향받지 않은, 진정으로 자발적인 동의의 뜻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견상의 동의가 아닌 '자발적 동의'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② 피해자 주관

성폭력으로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을 피해자의 주관이다. '동의'라는 외견상 동일한 형태를

4)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법적·제도적 인식은 실제로 표명된 여성의 거부의를 철저히 무시한다. 여성의 '노'는 언제나 '예'로 간주되며, 여성의 동의 혹은 비동의는 언제나 무시되고 있으며, 여성은 개인의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결여된 존재, 즉 동의라는 실천에 참여할 능력을 결여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태은경, 여성과 사회 제8호, p65, 한국여성연구회편, 참작과 비평사.)

5)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권수현, p16

6)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도서출판 나남, (1993) p211.

된다면, 그것이 '자발적 동의'였는지, '이타적 동의'인지 '순응적 동의'인지 여부의 가늠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의 주관을 판단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폭력과 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불쾌하게 느끼고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 피해자의 경험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러 피해자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을 불쾌한 것으로 간주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을 때의 발생할 수 있는 논박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이라는 의미를 상쇄할 작업이 필요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남녀권력불평등한 사회에서 '객관'이라는 단어가 여성 배제적인, 또다른 형태의 주관으로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지식체계나 언어에 대해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피해자의 '주관성'이 여성의 독특한 경험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작업이 요구될 뿐이다. 피해자 관점을 존중한다는 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법정에서는 가상적인 '합리적 인간'이라는 기준을 설정했다.⁷⁾ 즉 합리적 인간이 그 피해자의 위치에서 그러한 문제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를 판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 인간이란 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란 고정관념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이라는 기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가능성이 많지만, 이 기준이 반드시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남성중심주의를 벗어날 뿐 아니라, 특수자의 관점을 보편화하여 그것을 모든 상황에 대한 잣대로 삼는 전체구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약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그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들이 바뀐 것이다.

2. 성폭력 개념의 확장

1) 성폭력의 '폭력성'

- 성폭력을 '폭력'으로 규정

① 폭력으로의 규정의 유의미

7) 1963년 해리스 사건(Harris v. Forklift Systems, Inc., 114 S.Ct. 367)에서는 '합리적 인간'(reasonable person)이 적대적 또는 남용적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에는 객관적으로 적대적이고 남용적인 작업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이 그 또는 그녀의 심리적 복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증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되었다.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8, p.71, 창작과 비평사, 1997.

성폭력에 대한 초기 논의는 명시적인 폭력과 힘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논의의 한 측면은 성폭력이 성범죄로서가 아니라 폭력적 공격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성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성적 존재로서의 권리의 침해이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는 사회적 통제기제로 분석된다.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하나의 성적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성을 통한 남성의 권력의 행사로 간주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Brownmiller(1975)에 따르면 남성이 정치 경제적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종속의 상태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들을 지속적인 공포의 상태에 두는 "하나의 의식적인 집주"와 과정으로서, 성폭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방해하고, 따라서 남성의 지배에 도전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속에서 성폭력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불평등한 상태에 묶어두는 하나의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의 일부로 정의된다. 성폭력을 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이러한 분석은 그 행동의 동기의 성격이 반드시 성적인 것만은 아니며, 성폭력의 동기는 지배이고 분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⁸⁾

② '폭력'규정의 한계 → '성폭력'으로의 의미 규정 필요

성폭력을 '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바라보았던 이러한 시각은 여성 피해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성폭력을 통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드러내고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이 '폭력'의 한 형태라는 믿음은 성폭력의 사회적 통제 기능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을 '폭력'으로 개념화할 경우에 명시적인 폭력이 사용된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인정되게 되며, 여성의 저항 필요, 피해자 유발 논리 등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이러한 규정에서는 데이트 강간과 같이 규범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상당부분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한계를 띄게 되며, 성폭력이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정상적' 남성의 성적 충동으로 국한시키는 잘못된 인식을 낳게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통한 사회적 통제뿐만 아니라 선택을 배제하고 종속집단의 협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통제가 선호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 대한 통제는 궁극적으로 폭력뿐만 아니라 강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통찰은 타당하다. 데이트 강간에서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은 단순히 '폭력'으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보다 일상적으로 여성이 갖는 억압과 배제의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을 '폭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학대의 경험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요된 성 및 여러 가지 정신적·심리적 학대임을 알고, '성폭력'으로의 인식이 요구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 성폭력

성폭력은 단순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의 일환으로 사고되어서는 안되며, '성폭력'으로의 의미

8)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p.13.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폭력'과 '폭력'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겪는 성폭력의 학대와 억압의 경험이 아닌 물리적인 '폭력'에서 나타나는 성권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성에게 성권력을 기반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두는 '폭력'으로의 규정에서, 성권력으로 그 중심축을 옮기며 '성폭력'으로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개념규정의 변천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내구타를 예로 들겠다. 초기에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을 명명했을 때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두는 이름이 구타(battering)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학대의 경험을 이야기 함에 따라 신체적 폭력은 한 측면에 불과하고 강요된 성 및 여러 가지 정신적·심리적 학대도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여성의 피해대 경험에 관심을 등에 따라 '구타'에서의 개념 규정이 확장되었고 이전에 이름도 없었던 학대를 명명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들이 발달하였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남성폭력을 각각의 분리된 현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성폭력'이라는 보다 일반적 현상의 일부로 보게 되었다.⁹⁾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의 확장은 많은 이견을 갖는다.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당시에도 노출된 문제인데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에 참가단체간에도 성폭력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문제점이 나타났다. 성특위 내에서는 성폭력을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다양한 폭력(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강간, 아내구타, 아내살해, 강요된 매매춘, 포르노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국사회의 언어관행, 성폭력현상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에서의 전문화와 실효성문제를 이유로 '성적인 폭력에 국한되는 성폭력(sexual violence)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성폭력을 단순히 sexual violence로 사고할 때, 이 범주안에 아내구타의 포함은 무리하다. 아내구타가 포함되려면 성폭력이 아닌 이를테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이 명칭 사용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문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성폭력을 협의의 의미로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성폭행(강간, 성추행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성폭력을 협의로만 보는 것은 성기중심적인 한국문화를 반영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임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이 아닌 성을 기반으로한 남성의 권력 행사를 성폭력으로 사고해야 함이 분명하다. Brownmiller는 '물리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위해 약한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성폭력 개념의 핵심을 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gender violence)은 성폭력이다.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줄임말 이듯이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하며,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것이 성에 기반한 권력의 행사이므로 같은 개념으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성에 기반한 권력이 어떻게 폭력으로 작용하는지는 97년에 있었던 시립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MT에서 벌어지 성폭력 사건에서 극명히 들어난다. 당시 동덕학우들이 먼저 귀가하고 3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립대의 가해자 정범석(정밀기계공학과 92학번)이 동덕학우들을 욕설과 함께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었다. 이 사건을 단순히 '폭력'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다

음과 같다. 가해자 정범석이 피해여학우들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였다는 상황과 자신이 고학번이라는 권위, 남성과 여성이 위계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적인 (공포스러운)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자신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여학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비단 신체적인 폭력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폭력의 의미는 정치적 의미와 공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성폭력이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상태에 몰아두는 의도적인 위협행위임을 상기할 때, 이것은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의지를 거스른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으로 행사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여성들을 공포와 위협상태로 몰아넣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 96년까지 12년간 이화여대 대동계에서 자행되었던 고대생 집단성폭력을 상기해보자. 고대생은 이화대동계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집단 폭력을 가하였다. 그러한 행동이 단순히 '남자들의 재기'나 놀이가 아니라는 것은 대동의 자리인 이화광장에 침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행위가 유독 '여대'에서만 관습적으로 자행되는 지를 생각해 볼 때 고대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대생 집단 성폭력에서의 폭력은 성권력과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권력이 함께 작용한다. 물리력의 약자인 이대생을 물리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들은 그들의 '물리력의 우위'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그들의 생각이 사회적 주류라는 의식으로 '재미로 하는 놀이다'라고 규정하며, 피해를 당한 자의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 이화대동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용원가를 부르는 것 등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의 표출은 성정치적인 권력의 우위를 점한 자로서의 주류의식을 반영한다. 고대폭력을 성폭력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고대의 난동은 불평등, 남성지배, 위협, 강제 등 성의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¹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성폭력에서의 '성'

- 성적인 행위 뿐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

성폭력이 권력의 문제이며 성을 통한 남성의 권력행사로 사고될 때, 여성이 겪는 많은 경험을 성폭력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물리적 강제나 언어적 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행위로 생각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순히 '성적 행위' 뿐만 아니라 성에 기반한 권력의 문제임을 염두해 둘 때 '성별(gender)에 기반한 행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로 성차별과 성폭력은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이며, 실제 경험에서 성적 행위와 성에 기반한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 중첩되어 있고 또한 성에 기반해서 성적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성폭력에 '성적인 행위'란 단지 응시하는 행위에서부터 강간까지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시각적(불쾌한 응시나 음란한 시선, 성적인 체스췌어 등), 언어적(외설적인 언급, 암시, 농담 등), 육체적(건드리기, 접촉, 애무, 포옹, 추행, 강간 등),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봉사 요구(과도한 서비스나

9)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도서출판 나남, (1993) p206.

10) 피해자는 단순히 행사진행을 방해할 받고 물리적 피해를 당한 것 외에 성적지위에 의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예교의 요구, 술자리에서의 서비스 요구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기반한 행위'로 성별로 그 사람을 비하하는 행위, 성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혹은 위협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성차별적인 발언("여자가 하는 일은...", "여자 주제에..." 등)이나 여성비하적인 발언(욕설이나 반말 등), 고정관념적인 성별분담(차대접이나 청소의 요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처리 등)의 강요 등도 성에 기반한 성폭력이다. 이러한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한 행위는 서로 단절된 각기 다른 경험이며, 많은 부분 그 구분지점이 모호하다. 특히 우리가 판단기준으로 잡는 피해자의 경험에 있어서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한 행위'가 모두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경험이며, 그것이 성폭력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모두 성폭력으로 위치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차별의 폭력성

성폭력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행위를 말함에 있어서 이미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폭력과 성차별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과, 성폭력 개념에 있어서 그 두 개념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지적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성폭력과 성차별은 명확히 분리시켜 사고할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경험에 있어서 중첩되어 있다. 많은 경험들이 성차별이며, 동시에 성폭력으로 여성에게 개념화될 수 있다.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한 성차별의 문제이다. 즉 성차별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 유지된다.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그로인해 사회적 관계에서의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하기 때문에 성차별의 한 측면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성차별은 성폭력이기도 하다. 성차별은 그 안에 담겨진 성권력의 폭력성으로 단순한 차별로만 볼 수 없게 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폭력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은 권력이 위협에 빠질 때에만 사용된다. 그것은 오직 다른 통제 방식들이 실패했을 때에만 사용되며, 분명한 물리적인 폭력 외 사용은 오히려 다른 형태의 통제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은근한 회유, 협박, 강제 그리고 선택의 배제가 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여성을 배제하는 환경이나 행동, 언어들이 때로는 더 큰 억압이 되고 폭력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차별은 그것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이다. 그것을 언제까지 단순한 차별로만 따로 구분지어 개념화 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폭력이다. 차별화에 대한 개념은 폭력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폭력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차별화의 폭력성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 성차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성희롱 : 성희롱에 관한 소개

성폭력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 뿐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까지 즉 성별에 근거한 성차별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할 때, 이미 권력관계를 전제로 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 개념의 핵심은 단순히 성적 욕구에 기반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이다. 즉 성희롱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한정시키고 남성지배를 주장하는 수단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본다. 성희롱은 특히 직장과 같은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며,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 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성적자율권의 침해이자 '노동권', '교육권'의 침해라는 특수성도 갖게 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개념은 1970년 대 중반경부터 '성적 강제'를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채택되어 발전해온 개념으로, 현대여성운동의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조어이다. 성희롱 개념은 처음부터 성차별(sexual discrimination) 문제로 제기되었지 섹슈얼리티나 정조 같은 개념과 연관되지는 않았으며, 그래서 오히려 빠른 속도로 정립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필요성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대학 사회에서 문제시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항상 그러한 문제제기들은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공동체 내의 성문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보다는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탄핵(?) 정도의 해결을 보면서 대학 사회 내에서 잠시 이슈화 되었다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아주 빈번한 사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폭력이 일상화되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일상화된 성폭력에 의한 당위가 아닌 절실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우리의 권리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주장한다.

현재 대학 사회 내에서 학칙은 접근하기 어렵고 공동체의 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긴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폭력 학칙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을 때 학칙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학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써 '학칙'이라는 기제를 과감히 선택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화석화되고 고정된 규제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학칙은 현재의 학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한 유연한 학칙, 제정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학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것이다. 즉, 학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시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이 아닌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됨을 알림으로서,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만이 아닌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학칙이므로 우리가 사고하는 학칙은 현재의 학칙이 가지는 이미지 보다는 자치규약으로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하지만 우리는 자치규약이 아닌 명백히 '학칙'이라는 틀을 성폭력 방지의 수단으로 사고하고 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이라는 사건은 대학 사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설문을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해 보면, 물론 학생에 의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직원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사회내에서 완전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 뿐 아니라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성폭력의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반하기에는 자치규약이라는 것은 학생들만의 그것이 될 수

있기에 그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칙'이라는 틀거리를 택함으로써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하에 공동체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뿐 아니라 학습권도 보장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성폭력이 대학 사회에서 발생하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하면 대학 사회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 속에서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그 공동체 내에 적응하지 못하며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거나 떠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던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학 공동체 그 자체였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은 대학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학당국은 성폭력 사건 속에서 전혀 학내 구성원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학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기제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대학 사회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목적은 '처벌' 뿐 아니라 대학 사회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학칙을 통하여 우리는 대학 사회 내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순간순간의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사회가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보면 많은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 사회의 사회속에서의 역할을 우리는 인정하며,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형성된 성문화 역시 사회적으로 유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 사회는 구성원이 끊임없이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바탕으로 우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의 가해자 역시 사회적인 피해자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의 죄가 사해될 수는 없다. 그는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체현자로서의 죄과가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듯 가해자이며 동시에 사회적 피해자인 사람을 생산하는 모순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범죄이므로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죄과는 본래가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죄과가 돌아가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 내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에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성폭력 범죄의 딜레마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학칙의 단순한 처벌체계 이상의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원칙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성폭력의 개념에서의 원칙

성폭력은 성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다..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문제시되는 것이 그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혹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니는지의 판정이다. 흔히들 성폭력을 행동의 수위로 파악하면서 일정 수위 이상의 것은 성폭력이라 칭하지만 그 이하의 것들은 성추행으로 구별하여 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정도에 따른 구별을 우리는 과감히 떨쳐내려 한다.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의미 그 자체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것에 수위라는 것을 따질 수는 없다. 단지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 이후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의 경중은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애매한 단어가 나타나게 된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앞에서 성폭력을 성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라고 정의하며 그 정의를 학칙에까지 적용해야한다.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성성에 의한 피해가 너무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고 성성에 기반한 모든 성차별이라 불리우는 행위까지를 성폭력의 범주에 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상당히 특수한 범죄이기에 상황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성폭력

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온전히 그 사건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경험은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의 피해자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파악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을 새롭게 정의내리는 일은 공동체 내의 성문화를 바르게 바꿔나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제정과 적용에서의 원칙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수한 개인이 모였다고 하여도 그 사회의 문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일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폭력이라는 범죄이다. 보통 대학이라면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우며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사회 내에서도 비밀비재하게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을 저지른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그 범죄가 발생한 대학 공동체의 성문화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이 지니는 사회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성폭력 학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적용함에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단순한 보복의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처벌은 단순한 그 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서 학칙 내에서 충분히 공동체 내의 구성원에 대한 사과를 담아내며 그리고 공동체의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학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성을 살펴보았다. 그 논리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역시 공동체의 성문화가 만들어낸 피해자이다. 그렇다고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죄가 사해될 수 있을까?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이기 이전에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행한 가해자이다. 물론 공동체 내의 성문화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는 그러한 성문화 속에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범죄의 체현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한다. 가해자가 행한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침해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최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워져야 한다. 물론 가해자의 처벌 자체는 성폭력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만 그곳에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수위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특별위원회의 처벌결정에 대하여 거부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학칙은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성폭력 학칙은 대학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즉, 학생 뿐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공동체의 3주체가 동시계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통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성폭력 학칙이라는 것이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성문화를 바꾸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면 더욱 그러하다. 학칙이라는 것을 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자신과 주위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공동체 성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폭력 학칙이 단순히 하나 혹은 둘만의 주체가 중심이 되어 딱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성원의 동의하에 제정되고 적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성폭력 학칙은 유연하여야 한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학칙은 현재 대학 사회에서 인식되는 그러한 화석화되어있는 학칙이 아니다. 즉, 하나의 조항으로 굳어져 사건의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징계를 내리는 학칙은 우리가 원하는 학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학칙은 운영에 있어서 각 사안에 따른 유연성이 보장되는 학칙이다. 성폭력 사건은 여타 다른 문제와 달리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비슷한 행위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정도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학칙 그 자체가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매우 유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학칙은 개정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성폭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온전히 피해자 중심적이고 바람직하다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유연성을 성폭력 학칙은 지녀야 한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학구성원에 의한 모든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통한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여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일
2.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전을 빌미로 간음, 강제추행,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4.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5.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6.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는 것
7.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제3조 의무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대학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외부강사, 외인교수, 기타 촉탁직 포함)과 학생(교환학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5조 피해자 보호

제1항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항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징 계

제6조 특별위원회

제1항 구성

대학은 성폭력 관련사건의 가해자의 징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임무

1.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2. 가해자의 징계회부 및 교육
3. 피해자 치료와 보상의 확보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7조 신고와 신고인의 보호

제1항

피해당사자, 피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는 서면, 통신, 방문, 전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인 중 피해자가 아닌 자는 제5조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증인의 보호

증인은 제5조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증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자는 특별위원회가 정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9조 징계내용

징계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동조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1조 통보

특별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중간, 최종처리결과를 서면통보한다.

제12조 공고

특별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대학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폭력 상담실

제13조 상담실의 설치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지역사회와의 해당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4조 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로 인도
3.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요구
4.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1차 가안에 대하여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연대회의)>는 대학내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예방과 처벌, 즉 그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 끝에, 우선 관련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관악여성모임연대가 1993년 '신교수 사건(일명 우조교 사건)'을 계기로 내었던 2차 성폭력 학칙 가안을 텍스트로 삼아 새로운 학칙 제정 작업에 들어가, 그 결과인 1차 학칙가안본이 현재 자문 중이다.

제정 작업에 있어서는 각 개념의 정의에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관점을 뚜렷이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울러 각 학교의 학내 성폭력 사건을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다룬 경험에서 비롯한 학내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학칙안이란 자치규약, 즉 준 법으로서의 성격에 맞도록 추상성과 현 사회가 바라는 '객관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의 1차 학칙안의 수용에 앞서 아래의 설명적인 현재의 이상(理想)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그 적용에 있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오해들을 극복하고 그를 척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매우 섬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였다. 적용 과정에 있어 본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연대회의는 96년부터의 제정, 수정 작업과 7월의 세미나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의 검토를 받아 그 이념과 구체적인 생각들을 다듬어 왔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나 쓰인 문헌들의 목록과 그 전문 등은 연대회의에의 문의를 통해 가능한 만큼 제공될 것이다.

본 설명글에 대한 부연글을 붙인다.

부록 1 : 1998년 5월 14일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 1차 공청회(이화여대 중강당)에서의 성폭력 관련 학칙관련 질문들과 그 답변 모음

부록 2 : 동아대학교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규정> -연대회의 학칙과는 또다른 논의로 이미 제정된 동아대의 성폭력 관련 학칙

1. 목적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궁극적으로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들로 인한 폭력을 근절하여 대학사회가 각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이 적용됨에 있어 평등한 환경으로 지향되기 위함이다.

현재의 대학문화는 학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반영되는 현실이 마치 당연한 듯 남성중심적

가치규범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가치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사로서든 아니든 다른 구성원의 학내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직업, 학습,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 근로 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은 대학의 의무임이 당연하다.

이 학칙은 그에 대한 규정·규제·해결·예방하기 위한 구체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지향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사회의 성문화를 진단하고 가장 정당한 관점과 방식을 채택하여 합의하며 운용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학칙이 그 방안으로 채택되어 과학적인 연구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사회 정의와 성폭력 실태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아울러 다소 특이하다 할 수 있는 본 학칙의 위상을 천명하는 전문이 학칙 앞쪽에 첨부되어 채택되는 편이 이상적이겠으나, 전문이라는 개념의 글이 학칙이라는 법조문의 형식과 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칙을 산만히 만드는 구실을 하므로, 학칙운동에 있어서의 리플렛 등에 실어 알리는 등의 방법이 적절할 듯하다. 총칙에 있어서도 전술한 내용과 같은 학칙의 목적을 밝히고 아울러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규정과 구체적 모델의 제시로서의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칙의 일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형태가 간결하고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1차 학칙안에는 길지 않은 문장으로 줄여 넣었다. 나머지 부분들 역시 학칙 문안들 속에 녹여내어 발현하는 동시에 운동에 있어서,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 적절히 적용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덧붙여, 1차 학칙안에서 쓰이는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앞서 별도로 개념규정된 글에 의거하고, 본 설명글에서는 따로이 부연을 붙이지 아니하나 학칙에는 어느 형태로든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의미로 재규정 할 수도 있는 다른 많은 용어들 중 '성폭력'을 쓴 이유는,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상의 사람들 모두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생소한 용어 자체에 따라붙을 소모적인 논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미 외국에서 어느 정도 독립된 의미로 자리를 잡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그 수위에 있어 가해자중심적 기준의 '정도'를 함의하는 '성추행', 지금 여기서 쓰는 '성폭력'에 그 일부가 포함되기는 하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은 '성차별', 기타 여러 용어들을 일단 배제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 등은 헌법용어나 '성폭력(강간을 의미)을 당하지 않을 권리' 혹은 '성적 상대의 선택에 있어 자유로울 권리' 류의 협의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성적 괴롭힘'은 93년 신교수사건(일명 우조교사건)의 고등법원 2심에 있어 보수판결에 쓰인 용어로 쓰여 특히 사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리하여 1차 학칙안에서는 '성폭력'과 '성적자유', '성적자율권' 정도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감수를 통해 계속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환경형 성폭력의 개념을 차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부분적인 근거 상황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을 매개로 하거나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개인의 능력과 능률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거나 차별적,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모욕적인 학업, 근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차별적 또는 공격적이 언동이나 타인의

작업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상처주었을 때,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학교에서의 다른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 때, 문제가 되는 행위 또는 발언의 빈도와 정도를 생각하여 지속, 반복될 때.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비의도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지금껏 묵살되어왔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기준으로써 유효하다는 원칙을 제시함이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이었는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결과적으로 위해를 가한 이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서 피해를 받은 이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기에 그러하다.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성은 남녀에게 다른 형태와 다른 의미로 구성되고 적용됨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황과 그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학칙은 대학 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자치로서 실천하는 대학문화건설의 한 걸음인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라는 그 기준 문안이 불러일으킬 반대의 목소리들, 즉 현재 사회가 여성의 목소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한계를 생각할 때, 그러한 조항이 실제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기존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가치체계를 설득시켜 낼 지는 미지수일 것이다. 더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라는 무거운 책임이 걸린 '-학칙'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일 때는, 성폭력이라는 특수한 범죄의 피해자의 상황을 배려하는 우리의 입장과 상치할 수 있는, 더욱 '객관적'인 형태를 지닌 증거를 요구하는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 본 학칙이 담보해야 할 부분이, 실존하는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바르게' 분별해 내어 처벌하는 실무적 부분 뿐 아니라, '바른' 성폭력의 판별 기준을 세우고 적용함에 따라 대학구성원과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범조항으로서의 추상성과 바람직한 학칙으로서의 유연함, -상기한- 실효성 등과의 접목에 있어 묘안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1차 학칙안에 있어서는 일단 관련한 명시를 생략하였는데, 운용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믿음이 크다. 또한 학칙 조항의 완성이 학칙 운동의 마침이 아니고, 제정과 통과와 시행의 각 단계에 있어 펼쳐나가는 할 운동에 있어 담보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성폭력'에 포함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사고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발언이나 행위 옷차림, 신체, 성적활동에 대한 지나친 언급, 여성배제적인 불쾌한 성적 농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장제성에 의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폄하식 발언, 성기중심적인 공개적 행사, 음란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이러한 규정들은 국내외의 여러 모범적인 연구의 예를 참조로 더 보강될 수 있다. 1차 학칙안에 제시되는 예들은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열거가 아닌, 가장 빈번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계도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고, 제2조의 제7항과 같은 일반규정을 통해 다른 경우들을 포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운용시 상대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의 해석과 적용이 주류로서 행사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문제가 되나 유연성을 담보하는 일과의 병행으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되는 예들의 규정에 있어 방법적으로 다른 형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학칙이 '법'으로써 행사되는 무담의 맹점을 넘어서는, 규범으로서의 교육에 있어서의 철저함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자세한 자체규

범의 제시의 형식은 학칙과는 별도의 지침서 구성 등으로 고려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3. 대상

학칙의 적용대상은 학교 구성원이므로 본 학칙 역시 소정의 기준으로 인정된 실질적 역할의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적용의 정확을 기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교수는 외부교수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학생을, 교직원은 기성회적 이상을 포함하며, 외인교수 및 교환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건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의 변화는 그 징계에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시기는 사건 발생시이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도 본 학칙의 사건 후 관련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는데, 흔히 여겨지듯 가해자 처벌만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 노력에 있어서의 대학내 기구의 연대책임, 전 과정에 있어서의 각종 교육 등이 본 학칙에 의하여 담보될 것이다.

그러나 1차 학칙안에서는 굳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 일방이라도' 등의 문구를 넣지 않았다. 학칙의 내용에 피해자 보호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도 본 학칙에 의거하는 징계가 가해되어야 한다는 등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문을 보내는 일이나 가해자가 속한 단위에 징계를 요구하는 일 등은 학칙조항에까지 쓸 수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중 일방만 학교 구성원에 속할 경우에도 특별위원회가 그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고, 이는 특별위원회 회칙에 더 포함될 이야기이다.

4.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가)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는 신고된 학내 성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해결을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총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이 정한 특별위원회 회칙에 따르며 이미 비슷한 역할의 위원회가 만들어진 학교들 사례에서의 활동경과를 참조하여 더 고민할 지점이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또한 각 학교의 상황을 스스로 고려하여 회칙의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겠으나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이 동수의 비율을 구성하며 각각의 경우 성비 또한 동률로 하는 등 지위권력의 부당한 발현이라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를 맡고 가해자 징계회부 및 교육, 피해자 보상과 그 치료 등에 대한 의무에의 책임을 지고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도 책임진다. 회칙제정과 개정을 학내 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하며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현시키도록 한다. 특히 학칙이 법적인 추상성을, 그 역할을 담보할 구체성보다 중점적으로 건지할 경우 특별위원회 회칙이 담아내야 할 부분이 더욱 커지기에 그러하다.

아직 특별위원회회칙은 연대회의에서 생산된 바가 없다. 현재 '징계위원회'로 존재하는 성균관대의 예나 추진중인 서울시립대의 예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피해자 보호

다른 범주의 폭력과는 다르게, 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거나 여러 단

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슷한 구조와 비등한 고통의 또다른 폭력이 가해지게 된다. 이는 사건 후 특히 극심한 심신의 고통과 공포, 절망 등을 경험하는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배려되어야 하는 당연한 처우와 몫이기도 거리가 먼 현실의 한 단면이다. 궁극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각계의 직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명심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 발생하고 성폭력의 동기 중 많은 부분이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현재에서,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또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 사건 징계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사건의 종결이라고 흔히 생각되어지는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보호와 더불어 피해자의 권한을 설정하는 역할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1차 학칙안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학칙 또는 특별위원회칙에 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건조사과정에 참여하고 가해자 징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예가 있다.

6. 신고인과 신고인, 증인의 보호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하는 주변인이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신고죄와 같은 개념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함에 따라 무리가 없을 부분이다. 물론 신고인과 증인도 앞에 명시된 수위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점들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7. 신고와 신고기구

사건의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기타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 지도교수, 학과(부)장, 대학장, 대학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대표기구, 학내 여성관련단체, 성폭력관련상담소(외부단체) 등 피해자가 접촉 가능한 모든 대상에 신고의 의지를 안고 접수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모든 사건신고는 최종적으로 상담실에 신고되어야 한다.

8. 적용시한

기존의 형법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단계에서 시한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예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규정이 없다고 명시하는 등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규정 자체가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한 자세의 대사회적 모범으로서 의의가 있다. 단 학칙이 채택되는 과정에 실권을 지닌 부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껴거나 하

여 엉뚱하게 제정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제정 후 신고가 많을 경우 그 해결에 있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차 학칙안에서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넣지 못했다. 타협적으로 생각한다면, 같은 의미를 지니고 같은 역할을 하는 문안을 다른 형태로 삽입할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9. 징계내용

일차적으로,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 기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재교육,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자보, 언론 등을 통한 공개사과, 금전적 피해 배상, 기존의 학칙상 처벌들(학생일 경우 제적, 무기정학, 유급정학, 근신 등, 교수나 교직원일 경우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외부인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가해자가 속한 구성단체와 접촉을 통한 징계 요구 등), 경고장 발송(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 덧붙여 가해자 측이 각종 보복을 획책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된 명백한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징계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특히 재범일 경우 등에는 특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계의 내용과 그 근거에 대하여는 본 학칙에 따르지만, 공식적인 징계 이유는 본 학칙이 아닌 전체 학칙 중에 있는 요인에서 따오도록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현재 이런 경우 '품위 손상'과 같은 조항이 징계 이유로 쓰이고 있는데, 학칙 상의 그러한 관련 조항들과 함께 '성폭력 가해'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고 징계시 이유로 명시하여 그 까닭을 명확히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10. 부당히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 혹은 기관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양감을, 보복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이 두는 편이 학칙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의미있을 것이다.

11. 통보와 공고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는 사건진행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는 중간, 최종처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대학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앞서 소개된 경고장 개념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12. 성폭력 상담실 설치, 위상 및 업무

학교가 학교 내에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성폭력 관련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 임명하도록 한다. 말뿐인 기구가 아닌, 실제로 그 임무를 책임지고 충실히 수행할 의지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 상담실의 위상을 갖는 기구는 학내 어느 요소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

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학내 기구로서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 상담실이 그 영역을 확장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갖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담실이 그 산하에 들어가도록 설계된다.

업무 내용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학내 교육과 홍보작업으로서 새내기 배움터에서의 교육, 정규 성교육 강좌와 특별강연교육 개최, 각종 포스터와 소책자 발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창구를 유지하고 전용상담원을 확보하여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홍보, 교육 프로그램 등-들을 중점을 두어 시행해야 하는데, 대학내 성문화를 개선하여 가해자 재생산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더 생각할 사항들

다음은 본 학칙과 특별위원회 회칙에 각 위상에 맞게 나누어져 삽입되어야 할 내용이다.

- (1) 특별위원회의 사건해결책 제시 후의 이의 신청에 대한 조항과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 이는 불복 절차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있을 권리이지만 특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 구제책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 해결시한이 명시되어야 해결과정이 발전 없이 지난해지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터인데, 이 경우 규정에 쫓겨 성실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 (3) 사건의 기록과 기록보관의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
- (4) 사건조사과정 등에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하겠다. '피해자 진술시 명예감정 보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출석할 수 있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의 권한을 설정하는 문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록 1 : 1998년 5월 14일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 1차공청회 (이화여대 중강당)에서의 성폭력 관련 학칙관련 질문들과 그 답변 모음

Q. 남성/여성 대립구도보다는 성적 소수자, 권력 부재자의 논의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A.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본 학칙가안의 의도가 아니다. 방점은 성폭력일 뿐이고 어느 구석에서도 여성으로 피해자를 한정시키지 않는다. 소수자라는 단어란 그 권력의 무게 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리티'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듯한데, 문제는 그 '권력 부재'의 매개와 원인이 '성'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의 성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차가 아닌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인식되는 성차(gender), 그 권력차로 인해 야기되는 폭력상황들을 전제하는 의미부여다.

Q. 1. 학칙 가안에 있어 과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가?

2. 학칙 가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대학자치', 또는 자치권 보장일 것 같은데... (성폭력 문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고정화된 내용보다는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할 듯)

A. 1. 실제로 많은 지적이 있는 부분이다. 주로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비교적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계층이 될 것이다.

2. 학내 현실에 있어, 이러한 말썽많은 문제에 있어 '학생 자치'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투쟁지점이 발현되는 방식도 무시할 수 없다. '학칙 조항'이라는 '비밀 언덕'으로 학생/소수자 참여의 틀거리가 보장되어야 일단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학칙은 그 적용에 있어 유연해야 하지만, 그 '유연'이란 가해자가 빠져나가기 위한 법망의 추상성으로서가 아닌, 정의구현에 있어서의 융통성없음에 대한 경계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권력에 지위권력, 나이권력이 더해진 상위권력자의 권위가 인정되는 학내질서를 감안할 때, 학칙 적용에 있어 그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현재까지 해 오던 방식, 즉 학생운동단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이끌려 모든 것을 담보하게 되는 결과로 마쳐질 수 있다. 역시 일회적인 해결, 미숙한 수위의 해결 혹은 미해결로 앞으로의 모든 사건들이 호지부지될 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본 학칙을 단지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하기 위한만이 아닌, 대학이 포함된 사회를 향한 성폭력 근절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나갈 준비단계로 생각할 때, 단지 사건 해결만을 위한 주도권 문제로 읽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물론 교육자치권에 대한 논의는 본 학칙제정운동을 진행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고 관련 타 단위와 연대하여 서로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본 학칙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을 상기해 볼 때 더욱 신중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본 학칙이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말은, 적절한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들과 그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들이 학칙이라는 '악속'을 근거로 제시되고 생성되어 실제적인 권위를 지니고 활동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는 학생여성운동단위라는 '학내 성폭력에 누구보다도 관심있는' 주체가 학교본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의 '마넨'에 있어 절실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학칙에 사용되는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의 정의제시와는 별도로, 성폭력의 개념 규정이 나 제제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차라리 더욱 추상적인 법률어로 대체하는 것도 정의실현을 위해 더욱 올바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Q. 피해자 보호/신고인 보호 등은 매우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끼리만의 이갈리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며,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된다. (사실 법으로 만들어져도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대안이 있을까?

A. 본 학칙의 제정 목적을 상기하자면, 이러한 학칙이 제정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운동성을 갖는 것- 즉,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 근절을 위한 일보로서 충분히 가치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피해자와 신고인, 증인의 보호 등은 그 전략적 가치의 따점을 넘어 사수해야 할 부분이다.

Q. 학칙제정의 과정은 어떠하며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A. 각 학교별로 학칙, 즉 학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자치규약의 위상을 갖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 현재 아무래도 본 학칙 제정운동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학내여성운동단위들과 그에 동참하는, 점점 불어나는 단위들이 주체가 되어, 각 학생회, 교원노조, 교수협의회, 기타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단위로 소통해 나가고 운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운동방향 팀에 있어 더 이야기될 것이다.

Q. 여대에서의 학칙제정에 있어서는 남녀공학과는 다르게 사고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 특수성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그리고 타학교 구성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경우 학칙은 어떻게 적용되나? 즉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학교의 학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A. '조인트'로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오프 등 여대의 특수한 상황은 분명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성폭력이란 타교-남-학생들과의 상호계약적 모임이라는 그 전체 등 현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습적인 시선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사건주체들 중 일방-특히 피해자측-이라도 본 학칙이 적용되는 학교에 속하면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소한-피해자보호-부터 다른 모든 노력들-가해자가 속한 학교나 단체, 기업 등에 특별위원회 명의를 공문을 보낸다든지-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점은 남녀공학학교의 모든 구성원에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특이성에 대해 남녀공학 학교에 적합한 학칙가안과 특별한 차별성을 갖지는 않는다. 단 지금의 가안에 있어서는 '조인트' 모임 등 흔히 통용되는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불충분하지만 그에 대해 학칙상에서 따로이 명문화하기에는 무리인 부분이 크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운동과정에서 풀어내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한다.

타교 학생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 만일 가해자측 학교에 피해자측 학교와 자매인 학칙-본 연대회의 학칙 등-이 있다면 양교의 협의에 따라 해결과정이 진행될 터이지만, 가해자측 학교에 관련 학칙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측 학교의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해자의 학교에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등 처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른 각종 처우가 우선시됨은 물론이다.

Q. '성적 자기결정권'을 학칙 제목으로 걸 경우 야기될 문제들에 대한 준비는?

- 예) 1. 성적 자기결정권이 "육체적"의미로 환원되는 것
2. 대학 다니는 어린 미혼여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한다 -> "성적개방을 요구하는군, 대학가에 처녀가 없다더니"
3. 일반화된 용어사용이 훨씬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A. 앞으로 운동과 제정 자체에 있어 학교마다 많은 타협이 있을 것일 터이고, 우리의 이상과 궁극적인 목적을 찾고 바로 세우고 보완하며 알려내는 이러한 논의과정에서조차 그 외지를 보이지 못한다면 과연 올바른 일이지.

1.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아이디어는 가해지는 성적 언동, 행동에 대한 의미를 자신이 결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의가 전문과 총칙 등에 따라붙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2. 학칙이라는 제도로서의 방안이 갖는 무게의 미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전 사회에 통용되는 법이 아닐까 한다. 사회에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따라 성희롱이라 불리는 경우도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에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 그 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사회인 대학에서의 자치규약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새 학칙 스스로 받는 응답들을 식여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주장한다.

3. 대중운동에 있어서나 멀리 보아서나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새로 정의하여 사용해 나가는 것이 나으리라는 판단이 중론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차별에 의한 폭력성의 여성경험 등은 제정운동에 설명되고 학칙 속에 녹여내고 적용에 있어 주장되는 것이 전면에 드러내어지는 것보다 나올 수 있다.

Q.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왔던 피해자의 감정 등을 중시하는 것은 좋지만 "느낌이나 감정"등은 '주관적'이기 쉬우므로 남성들이 흔히 말하는 '피해의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정신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

A. 가해자의 인권은 지나치도록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누구나 짐작할 터이고, 이러한 질문은 그를 걱정함에서 연유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치부됨을 없애고자 이 학칙은 고안되었고, 단순히 사회정의의 위한 법 개정 정도의 수준이 아닌 여성운동성향을 끊임없이 유지하려 고민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연대회의 학칙의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코넬대학 학칙 또는 이번해 연세대 사회대 모임 'beyond'에서 펴낸 <자치규약> 등에 자세히 소개되는 실천사항들이 주목된다. 상담실이 신입교원과 전체교수, 신입생 등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서 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학구성원 각자의 자성경험을 고무시켜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학내 성폭력의 근절이라는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것이 담보될 수 있는 학칙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다.

부록 2 : 동아대학교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규정> - 연대회의 학칙과는 또다른 논의로 이미 제정된 동아대의 성폭력 관련 학칙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는 것
2.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3.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것
4.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5.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6. 몸이나 손으로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7.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수행하는 것
8.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수행하는 것
9.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나 특전을 빌미로 강제 수행하는 것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시간강사, 속탁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4조(피해자 보호)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장 징계

제 5조(교원의 징계)

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6조(직위의 징계)

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아학숙 직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7조(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한다.

제 8조(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제 5조 내지 제 7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 9조(징계결과의 공고)

학교는 제 5조 내지 제 7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성폭력 상담실

제 10조(상담실 설치)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해당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1조(상담실의 임무)

상담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4.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12조(운영위원회 등)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 3명, 학생 3명, 상담실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실장이 그 의장이 된다.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을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에 관하여...

1.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차별과 회동과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를 거울 반영이라도 하듯이, 지금의 대학사회 역시 이러한 성문화·성담론들에 찌들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내 여성운동 단위에 의해 제기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은 지금 대학사회 성담론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내 성폭력 사건들에 보다 적극적이고 바르게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우리가 학칙제정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지점들과 더불어 독자적이면서도 독립되지 않는 진정한 여성주의적 운동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방향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2.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을 통한 성적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의 의의를 여성운동, 대중운동, 자치운동으로 구분하였을 때¹⁾, 대중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성주의적 성적 담론의 재구성일 것이다. 학칙의 제정을 통한 여성주의적 담론의 재구성은 학칙 자체의 내용과 구성을 통한, 그리고 제정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적 시각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얻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측과의 협상을 운동방향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대중과 분리된 채 여성운동가에 의한 투쟁으로 이 학칙이 제정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배제시켜야 한다. 대중을 학칙제정투쟁에 동원하기 위해 대상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대중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성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자치적인 규약으로서의 학칙을 만드는 과정' 운동 속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은 획일화된 모습으로 나타내어질 수 없으며 이것은 지금의 정의된 '운동'을 넘어선 대중들의 직접적인 행동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여성운동 단위에게 있어서나 전반적인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어서 유효한 목표지점이라면, 대중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외침(?)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학칙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과 억압적·통제적 적용방식 때문이다. 학칙은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최소한의 운영원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칙이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제정되는지 모르고 있다. 단지 그것은 존재하며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학칙으로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정과정에서 일반대중으로부터의 괴리를 가져올 것이며, 적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이 갖게 되는 문제지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을 통해서만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그 실제적인 내용의 구성·제정·적용에 있어서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여성운동으로서의 학칙제정운동.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갖는 학칙의 제정도 기존의 남성적 운동방식의 무비판적인 답습으로 여성주의적 운동방식이나 여성주의적 목표를 배제한 채 이루어져서는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또 위와 같은 여성운동이나 기존의 학생의 중심의 운동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학내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자 하는 단위들도 '비판과 차별 점의 부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대안적 운동구조를 형성해낼 수 없다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의의와 목표를 담보해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칙제정에 있어서의 커다란 목표지점의 달성과, 여성주의적 운동방향의 고민의 병행으로 여성주의 운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4. 타운동단위와의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칙을 통한 대학사회 성문화의 재구성', '실물적 기재로서의 학칙' 이 대학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되새겨봤을 때 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단위에 의한 독립적인 운동임을 부정한다.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이라는 튼튼한 토대를 가져야 함도 같은 맥락에서의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5. 학칙제정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기간 연대회의는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에 관한 설문지 작업이나 학칙제정 공청회와 같은 연대회의 위주의 사업들을 진행해왔음으로써, 각각의 활동들이 가지는 한계지점들에 의해 학칙에 관한 대중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연대회의를 통한 여성운동인자들에 의한 학칙 대중에 의한 학칙의 고민은(대중들이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점점 거리를 더해만 갔다. 여성운동가라는 특정인에 의한 운동이 아닌 대학사회의 전반적인 운동으로서의 학칙제정운동이 바람직하다면 학칙제정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학칙제정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학칙제정운동에 대한 제언.

그동안 진행되어온 학칙제정운동에서 보여지듯이 학칙제정운동은 그야말로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으로 매몰될 우려가 있다. 지금의 성담론에 대한 대중적 논의의 부재는 학칙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재로서만 사고할 수 있으며 또한 학칙을 통한 문제의식의 심화 역시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다, 아니다' 라는 논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정이 필요할 듯 싶다.

1) critic 7호 "성폭력 학칙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에성 인용

성폭력 사건 사례

- 온라인 성폭력

1.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3월 이화여대 한 학우가 PC통신 도중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이 남학생은 대화 도중 '나 **야, 너랑 나랑 이틀전에 여관에서 잤잖아... 니가 나를 위해 온갖 서비스를 다 했던 것 기억 안나?'라는 등의 언어적인 성폭력을 가했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대화방을 빠져 나온 후에도 계속적으로 메로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 여학생은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신사의 불량 이용자 센터에 고발하였으나 '하루에도 그런 항의전화가 한 두통이 아닌데 왜 유독 너만 난리냐'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 통신사 측에 한 고발이 소용없게 되자 피해자는 여성위원회를 찾아와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제보와 사건 해결을 위한 의뢰를 받은 후 여성위원회는 가해자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 내에 가해자 본인이 게시판 등에 밝힌 내용으로 신변조사를 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여성위원회 측의 모든 연락을 무시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사실의 인정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잠시 고전했다. 후에 연락이 되었을 때에도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고, 아이디 소지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성명서와 사과문 요구서를 보내겠다는 여성위원회 측의 말에 격분하여 직접 찾아오겠다고 하였으나, 익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계속 요구하며 직접 만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여성위원회는 3월 18일 성명서, 사과문 요구안(3월 25일 도착 요구), 참조법안을 작성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학교에 등기로 발송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학교인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대위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 성명서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와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

3월 25일, 상황 자보를 이화여대 정문 앞에 게시하였다.

3월 26일에 여성위원회는 가해자의 학교 교학부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등기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가해자에게 호출기와 휴대전화로 등기를 찾아갈 것을 통보하고 성명서 등을 재발송하였으나 30일에도 여전히 가해자는 등기를 받아가지 않았다. 여성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중인 앞에서 직접 성명서 등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재요구한 사과문 도착 시한인 4월 6일까지도 가해자는 사과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화 여성위원회는 당초에 가해자가 사과문을 보내지 경우 가해자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고 이 사건과 온라인 성폭력에 대하여 공론화할 것이며 언론 단체에 공개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전했다. 기한 내에 사과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가

해자에게 이상의 내용을 등기로 통보했다.

4월 14일 가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이화 여성위원회를 고발하겠다고 PC통신을 통해 전자우편으로 알려왔다. 또한 통신회사 나우누리 웹진 '퍼즐'에서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한 글을 요청해왔다. 4월 15일, 사건이 발생했던 통신회사 유니텔의 게시판 운영자가 가해자의 요청으로 통신 상의 여성위원회의 글을 삭제/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메일을 보내왔다.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이유였다. 여성위원회는 가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님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각종 일간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취재했다. 또한 나우누리 웹진 '퍼즐'에 관련 글을 실었고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와 피해경험, 향후 대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날 저녁 돌연 가해자로부터 사과문을 발송했다는 연락이 왔다.

4월 16일, 이화 여성위원회는 유니텔 측에 항의문과 요구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통신 내의 성폭력 문제에는 당연히 통신사에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텔 측은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점과 해결에 대해 처음부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을 항의함과 동시에 통신공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통신사로서 통신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였다.

이 날 동아일보에 사건이 처음으로 기사화되었다.

4월 17일, 유니텔 측에서 담당자끼리 만날 것을 제안했다. 유니텔에 대해 1) 가해 아이디의 해지 및 재가입 금지 2)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에 대한 제재 강화 3) 초보 가입자에 대해 통신 내 성폭력에 대한 대처법과 갈무리하는 법을 메일로 보내줄 것 4) 통신 초기 접속화면에 통신 성폭력과 관련한 경고문을 띄워줄 것을 요구했다.

4월 20일, 가해자의 사과문이 도착하였다. 나우누리 웹진 '퍼즐'에서 실시한 온라인 성폭력 설문의 중간결과가 나왔다.

4월 24일, 민우회와 공동 명의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그 후로도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대처 등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2. 무엇이 온라인 성폭력인가

온라인 성폭력은 비단 이번 사건의 배경인 PC통신에서 뿐만이 아니라 음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모든 성폭력을 포괄한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다시 해본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흔히 강간 등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기 삽입으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다양한 성적, 또는 성에 기초한 원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폭력의 예로는 1) 시각적 (결혼절하기, 응시하기) 2)언어적 (외설적 언급, 암시, 농담) 3)육체적 (건드리기, 몸터들기, 강간) 4) 사진 및 녹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성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현 가부장적 체계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은 그 심각성이 그다지 인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부장적 성문화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게 하여 다수의 남성들에게 일방적이고 강요적인 성적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남성의 특권인 양 여기게 한다. 즉, 성폭력은 현 사회의 성계급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가해자 남성에게는 가벼운 장난일 수 있는 것도 피해자 여성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는 비록 사전적 의미대로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은 모두 현실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여 그 성격이 현실의 공간과 밀접하며, 나아가서는 현실공간의 문화와 문제점을 기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현실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음란물과 성적인 접촉을 가상공간 특유의 익명성으로 눈가림하여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 또 사이버 스페이스는 현실과는 달리 개인의 행동을 강제할만한 뚜렷한 장치가 없고, 그 공간 내에서의 범죄는 대체로 현실공간에서 심판받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는 현실공간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더 큰 무게로 작용한다. 즉 이 가상공간은 출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선택의 현실'인 것이며, 그 안에서의 행동은 리얼스페이스(real space/현실세계)에서 범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가상공간에서의 규제나 그 기준은 아주 모호하다. 물론 이것은 현실, 가상세계 양쪽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현실의 관념을 보유한 가부장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수적으로도 열세인 여성들은 가상공간 안에서 현실보다 나을 것 없는 상황에 접해야 했다. (1) 전세계 약 5천만명의 인터넷 네티즌 중의 70% 이상이 백인 남성이고, 70만 국내 PC 통신인구의 80%가 남성이다. 실제로 통신 자료실이나 대화방에서는 남성사용자들에 의해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성적 농담 일색이며 어느덧 그러한 문화가 PC통신의 고유 성격으로 정형화되어가는 실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네티즌의 자정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통신 내의 문화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온라인 성폭력같은 사건을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 혹은 '통신예절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극소수'의 일로 치부하려 할 뿐 성(性) 간의 권력구조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극히 드물다. 즉, 개인윤리의 문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크지만 성, 혹은 그 너머의 권력·지배욕으로의 방향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다. 통신의 가장 큰 특성인 익명성 또한 성폭력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다. 지탄받는 행동을 하면 상당 기간 혹은 그 이상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현실 공간과는 달리 통신에서는 그/그녀를 나타내는 단일한 표식인 '아이디(ID)'를 바꾸면 보통의 경우 지난 행동에 관한 추궁이 불명확하게 되어 묻히게 된다. 게다가 얼굴이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아이디를 대여받거나 임시 아이디를 쓸 경우에는 더욱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온라인, 특히 PC통신에서의 성폭력은 수없이 자행되어 왔고 피해자들은 마땅한 대책이나 해결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렇듯 “성폭력이란 신체적인 것”이라서 “통신에서 성폭력이란 없다”는 성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온라인 성폭력이란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성폭력은 강간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의 성을 기반한 언어적 폭력도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은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의식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린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편향적인 왜곡된 성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보여 주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 당사자들은, 통신에 접속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해지시키는 경

우도 있다. 이는 통신공간이라는 영역에서 그나마도 소수인 여성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사람들은 온라인 성폭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라인 성폭력 사건이 생긴 후,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온라인 성폭력의 인식도와 실태를 알고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여대 학우들과 나우누리(나우누리)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각 각 동시에 진행시켰다. 다음은 이화여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내용이다.

〈설문 내용〉

Q. 통신접속 후 한번이라도 아래의 예(와 이에 준하는)에 해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라인 성폭력의 예

- 검색을 하자는 등의 야한 이야기를 담은 쪽지를 받아보았다.
- 대화방에서 성적인 질문 (몸무게가 얼마나, 가슴이 크냐는 등의)을 받아본 적 있다.
-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섹팅을 요구하거나 섹스에 대한 경험담 등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 메일이나 메모를 통해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게시물이나 자료실을 통해 성적 모멸감을 받은 적이 있다.

1) 있다 2) 없다

간단한 설문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치는 명확하게 도출되었지만 해석은 뚜렷하게 구분짓기 어려웠다.

1)번 '있다'를 답한 사람은 66%, 2)번 '없다'를 답한 사람은 35%였다. 그러나 2)번을 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이유를 "대화방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부연설명을 덧붙여왔다.²⁾ 또 게시물에 대해서는 "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성적 모멸감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라는 답변도 상당수 있었다. 이 설문은 문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적도 많았다. 예를 들자면 "대화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몇 분이 해주었다. 이 설문 결과로 볼 때, 대학 여성들의 유니텔의 경우 자기소개글(profile)에 신분이 표시되며 자세히는 학교까지 표시된다.³⁾ 따라서 조회자는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이 대학생임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으며, 등록한 후

- 2) 이것은 온라인 성폭력이 대부분 대화방에서 언어를 통해 직접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번에 답을 한 사람들이 부연해준 설명에서나 이후 여성위원회에 접수된 몇 가지의 제보에서도 역시 대부분이 대화방에서 온라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게시물 등에 성적인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도 많았다.
- 3) 이화여대 96학번인 S씨는 1996년에 나누누리에서 제공한 학교(단체) 아이디를 사용했었다. 그 아이디는 이대물 나 타내는 vz에 학번을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 보아도 이화여대 96학번이라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S씨는 1년 정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다른 아이디로 바꾸었는데, 바꾸기 이전에 대화방에서 자주 당 하던 성폭력 횡수가 현재저 줄어들었으며 대화방도 성별이 모호한 것으로 바꾸었을 때에는 전혀 성폭력을 당하지

자기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등록할 때의 정보들(예컨대 학교, 과 등)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번 온라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이화여대 학우도 통신에 가입한지 얼마 안된 초보자였기 때문에 소개글에는 자동적으로 학교와 전공이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소개라는 것이 있는지도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다음은 나우누리 웹진 '퍼즐'을 통해 전(全)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다.

#1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1] 다음은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들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 대화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음담패설을 한다.
-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질문을 한다. ('너 가슴이 크냐?'는 식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검색을 요구한다. (검색하실래요? 동의 쪽지..)
-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올린다.
- 메일이나 메모를 일방적으로 보내 강제로 만남을 요구한다.
-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오프라인에서 성폭력을 가한다.

- ①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있다.
- ② 일부는 성폭력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 ③ 언어적 폭력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④ 통신상에서는 성폭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1번의 예와 같은 사항들을 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직접 가해 본 적이 있다.
- ② 해본 적은 없지만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 적은 있다.
- ③ 해보거나 들어본 적 없다.

[3] 온라인 상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
- ② 심각한 문제이나 통신에서의 일이므로 통신사 측의 제재가 필요하다.
- ③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④ 별로 중요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2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1] 다음은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들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 대화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음담패설을 한다.
-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질문을 한다. ('너 가슴이 크냐?'는 식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검색을 요구한다. (검색하실래요? 동의 쪽지..)

않는다고 답했다.

-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올린다.
- 메일이나 메모를 일방적으로 보내 강제로 만남을 요구한다.
-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오프라인에서 성폭력을 가한다.

- ①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있다.
- ② 일부는 성폭력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 ③ 언어적 폭력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④ 통신상에서는 성폭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1번의 예와 같은 성폭력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직접 당해본 적이 있다.
- ② 당해본 적은 없지만 다른 이의 피해경험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다.
- ③ 당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3] 온라인 상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
- ② 심각한 문제이나 통신에서의 일이므로 통신사 측의 제재가 필요하다.
- ③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④ 별로 중요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이에 따라 '웹진'에서 설문 결과와 분석을 올렸다.

총 참여자수 : 1,368명 - 남 891/ 여 477

조사 기간 : 4월 16일~ 22일

먼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90% 이상의 절대 다수가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68%, 여성의 경우 85%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경우 6%가 직접 가한 적이 있고,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무려 56%가 직접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성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80% 이상이 제재에 동의했고, 그중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1%, 남성도 40%나 되었다.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

'1'에 대한 답변

	남성	여성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있다.	63%	73%

일부는 성폭력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31%	18%
언어적 폭력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	3%
통신상에는 성폭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4%	6%

‘2. ‘1’ 번의 예와 같은 사항들을 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 (남성만 답변)

직접 가해 본 적이 있다.	6%
해본 적은 없지만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 있다.	62%
해보거나 들어본 적 없다.	32%

‘2. ‘1’ 번의 예와 같은 성폭력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만 답변)

직접 당해 본 적이 있다.	56%
당해 본 적은 없지만 피해경험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다.	29%
당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15%

‘3. 온라인 상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여성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40%	51%
통신상의 문제이므로, 통신사가 제재해야 한다.	45%	33%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2%	7%
별로 중요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3%	9%

4.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사건 해결을 위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각 통신사를 통한 설문조사 이외에 온라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토론에 참여하였다. 비단 토론방 뿐만이 아니라 각 통신 동호회와 게시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우누리에서는 토론방(go acro 2)에서 “통신 성폭력, 이대로는 안된다.”(토론방장 정희석, ID:whenid)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방에서는 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상황과 자신이 겪은 온라인 성폭력 경험담 등을 토로하는 비교적 평범한 분위기에서 남녀 대결의 양상으로 논점이 빚나가서 애초에 토론방장이 기획했던 ‘통신 내의 온라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작은 모임 꾸리기’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밖에 각 통신사의 이화여대 통신 동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부 남성들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학우들 간의 논의는 건강한 편이었다.

5.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략>...S씨는 결국 수정사과문을 통해 “ID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통감하며 이 ID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여성위측은 이 사과문을 바탕으로 유니텔측에 S씨의 ID해지를 요구했고 유니텔측은 S씨에 대한 정식 ‘추방조치’를 취했다. ‘익명의 바다’에 또다른 ‘규칙의 물기둥’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동아일보, 4월 29일)

서울 지하철 객실내의 성추행 경고방송에 이어 PC통신에도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경고 문구가 게재된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4개PC통신사로부터 △공지사항란에 성폭력 방지의 문구와 처벌내용(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지하고 △가입자들에게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내 메일을 발송하거나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의 ID와 실명공개, 다른 PC통신 이용제한’에 대한 요구는 전기통신법의 정보유통 금지조항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5월 13일)

“사이버스페이스 접근 금지!”

피시통신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응해 컴퓨터통신서비스회사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성폭력 추방 캠페인에 나선다.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 등 4대 피시통신회사는 최근 공개대화방의 대화나 쪽지 보내기 등으로 여성 통신 이용자들을 성희롱하는 성폭력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성폭력 방지 방안을 각각 마련해 내놓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명단을 특별관리해 자사 통신망의 이용을 영구 중지시키는 제재 조치를 비롯해, 대화방 등 통신이용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성폭력 방지 알림글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천리안은 이달안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온라인 안내편지를 가입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며 나우누리 등은 공개대화방에 성폭력 경고글을 항상 게시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한겨레신문, 5월18일)

이번의 온라인 성폭력 사건의 해결로 인한 성과는 과거에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어느 정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상의 성을 기반한 언어적 폭력도 명백한 성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은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의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깔린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편향적인 왜곡된 성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성폭력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천리안 고객센터의 심현정 과장은 “사기 매매자와 함께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무법자인 성폭력 가해자가 나타날 경우 앞으로 통신공간에서 영구 추방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판단기준 마련이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가상공간에서의 법규는 여전히 현실계에 거의 전면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구

조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네티즌 개개인의 윤리의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성폭력도 마찬가지이다. 현실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된 대다가 수적으로 소수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 제대로 된 판단기준과 올바른 정치기구가 없다면 가상세계에서도 '주변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각 통신사에서 하게 되는 일은 극히 초기적이고 미미한 대처법이며 경각심을 주는 데에서 그치는 정도이다. 현재에도 온라인 성폭력은 무수히 일어나고 있으며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덮어 두고 정신적 피해를 입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1) 피해자에 여성만을 상징하고 남성을 배제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통신 공간에서 남성이 (모르는)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온라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남성들 대다수가 1) 여성의 아이디를 빌려 쓴 경우, 2) 이름이 관습적으로 '여성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3) 아이디가 여성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경우, 4) 대화명을 여성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대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가상세계에서 현실계의 영향을 암묵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경우로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통신 안에서의 표식으로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과, 여성들은 리얼 스페이스에서보다 더 노출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있음을 뜻한다. 즉, 그 사람은 "단지 여자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성폭력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을 직접 경험해본 남성들만이 그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처법

여기에서 말하고자 '대처'란 것은 사태에 대한 완전무결한 해결책이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 상황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대처법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방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갈무리하는 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갈무리(현재 화면의 상태를 파일로 저장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폭력을 당하여 통신사 내의 불량이용자 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면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증거물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화 내용 갈무리이다.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대화내용을 갈무리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에게 즉시 멈출 것과 사과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자신을 두려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대개 통신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이용자이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후에는 그 상황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를 해두어야 한다. 가해자가 보낸 메모나 전자우편은 모두 보관을 하고 그밖의 모든 접촉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한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를 한다면 그동안 확보했던 증거자료를 통신회사의 신고센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자 아이디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또는 성폭력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이용유감 조항에 의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법적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

학칙제정운동 사례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경과 보고♣

- 여학생상담실과 성폭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1.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 활동

-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상담소(여학생 상담실)에 대해서

90년대 들어서 성문화 자체가 점점 개방되면서, 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 분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애초 우리 나라의 성교육이란 극히 미약하고 성기 중심의 성교육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순결 등 대부분이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성폭력 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위주의 사건 처리로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뭔가 모범적인 작은 사회로 인식되어 성폭력이 은폐되고 따라서 성폭력의 발생이 빈번한 곳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성폭력 사건 -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뿐만 아니라 교수와 제자 사이까지 - 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올바른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95년 11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과 관련된 교양 과정을 확대,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요원 확보, 여대생 취업을 담당하는 부서 마련과 함께 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여학생처를 학교측에 요구했고, 호신술 강화를 통해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96년 12대는 성 인식의 변화를 위한 꾸준한 활동과 함께 11대에 이어 여학생처를 요구하였다. 컴퓨터에서 성폭력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학내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서 성폭력 상담소 설치, 여성학 강의 증설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1년 동안 일을 진행시키면서 여학생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2학기 부터는 여학생처 자체에 대한 설치 요구보다는 우리 학교의 상황에서 가능한 형태인 "학생 생활 연구소" 내에 여성 전문 요원 배치를 통해서 성폭력과 여학생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 성폭력 상담실을 제기하였다.

97년 대동제(봄) 기간에 발생했던 화장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3대 총여학생회에서 총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성폭력 상담실을 다시 제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가 총장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성폭력 상담실이 학생회관 2층에 개설되었으나 개방된 공간이라는 것이 상담실 이용을 저하에 요인 (상담소에 가는 학생은 성폭력을 당했다!) 이 된다고 생각되어 문리학관 1층으로 옮겼고, 명칭 또한 학우들의 거부감을 우려하여 '여학생 상담실'로 이름을 바꿨다. 처음에는 심리학을 전공하신 도시사회복지학과 여교수님이 맡았으나, 학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본래 설치 목적(성폭력 상담)에 맞는 분을 총여학생회에서 요구하여 한국 성폭력 상담소 책임 상담원이 맡게 되었다. 현재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지난 가을에 학생 생활 연구소에 성폭력 상급 상담 조교가 배치되었다.

지난 13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올바른 성 인식을 위한 교육 실시(여성학 강좌의 교양 필수화, 여성학·남성학과 관련된 교양 과목의 확대), 학내 성폭력 상담소의 현실화(성폭력 상담 전문 용원 배치, 전문 상담자가 독자적으로 운영) 등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지난 97년 2학기에 여성학이 2개의 강좌(여성학, 성과 사랑)로 분반되었고, 여성학이 교양 자유 선택에서 3학점의 교양 선택의 과목으로 바뀌고, 성과 사랑이라는 2학점의 교양 자유 선택 과목이 신설되었다.

2. 여학생 상담실에 대해서

98년 현재 여학생 상담실은 상담실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이용률이 매우 낮다. 이는 학우들이 성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고, 은폐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또한 상담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이고 이용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되어서 실제 이용가능한 시간이 매우 적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학생 생활 연구소에 성폭력 상담 상급 조교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실의 일보다는 학생 생활 연구소의 일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상담실의 활성화의 부족으로 여학생 상담실의 업무가 많지 않으며 학생생활연구소의 업무가 많아서 여기에 치중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뿔을 때는 성폭력 상담 상급 조교였지만 현재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조교는 성폭력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조교를 뽑는데 나이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성폭력 상담소(여학생 상담실) 상담 선생님이 조교가 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조교는 위원회의 간사로 위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회의가 진행된 것을 정리한다.

앞으로 상담시설의 활성화와 현실화를 위해서는 성폭력 상담 상급 조교가 성폭력 상담원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학생생활연구소가 아닌 여학생 상담실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학생 상담실 선생님은 현재 상담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앞으로 학내 성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 상담의 특성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이 아닌 상급 상담원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문제와 상담원의 독자성 보장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대동제와 모교지에서 발생된 성폭력으로 인하여 학생회 단위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폭력 상담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단지 상담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각 대학장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닌 사람도 아닐뿐더러 피해자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되어 피해가 가증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3대 총여학생회에서는 학칙 제정이라는 것을 학교측에 건의하게 되었고, 이때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에서 검토, 진행 중이었던 성폭력 학칙 가안을 제안하였다.

3. 성폭력 위원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97년 여름을 지나면서 학칙 제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여 진행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학교측에서는 98년 3월에 14대 총여학생회 선거 도중에 성폭력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4월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학생 위원 3명을 선임해서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에 총장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이 있는 후에 4월 24일 정식으로 「학내 성폭력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명칭이 변동이 많은데 현재(98년 8월 현재)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이다.

<1차 모임 : 4월 24일>

이 때 위원회의 명칭은 학내 성폭력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였다. 이 날 모임에 참가한 분은 학생처장(남), 부처장(남), 법학과 교수(남, 2), 철학과 교수(남), 수학과 교수(여), 환경 공학부 교수(여), 학생 위원(여 2, 남 1), 여학생 상담실 상담원(여),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원(여), 성폭력 상담 상급 조교(여)님이 참가하였다. 이 날은 처음 만나는 자리로 서로 인사를 하였고 위원회에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생 생활 연구소에서는 학내 성폭력 예방 대책 특별 위원회의 규정 가안을 제출하였고, 다음 모임에 모여서 이 규정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날은 단지 인사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과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였다.

<2차 모임 : 5월 8일>

학생 생활 연구소에서는 <성폭력 관련 기사 모음과 서울대 예방 지침서 내용 발췌> 자료 집을 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실제 성폭력의 실태 자료로서 타 대학의 경우 예방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준비되었다. 그리고 14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위원회 규정안에 대해서 총여학생회 내에 위원회 규정안 준비팀을 마련하여 이 준비팀 내에서 위원회 규정안 중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이 날은 14대 총여학생회가 제안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이날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법학과 박영규 교수님께서 위원회 규정 가안을 만들어 오기로 하였다.

<3차 모임 : 5월 15일>

학생 생활 연구소에서 10시 30분에 모여 법학과 교수가 만들어온 가안에 대해서 법학과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각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일부 부분이 수정된 후에 전문가이며 이 위원회의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한 김삼화 변호사님께 검토 받는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현재 김삼화 변호사님은 우리 학교 행정학과 80학번 선배님으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법률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후 학생 생활 연구소에서 변호사님께 규정 가안을 보내 드렸다.

<4차 모임 : 7월 3일>

김삼화 변호사님께서 수정해서 보내 주신 것을 다시 수정 작업을 하였다. 박영규 교수님이 보내주신 것과 김삼화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수정된 규정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하고 수정 작업을 하였다. 그래서 이날에 얘기된 최종적인 것을 학교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성폭력 위원회가 공청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등 모두 시대인들에게 이 위원회의 규정안을 알려 내기로 하였다. 공청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단지 규정안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개념과 함께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후 학교의 법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의 규정안을 수정하고 교무위원회에서의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8월에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 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규정안이 변동이 있었다. 총장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제안이 처음에 있었지만 학교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서울시립대학교 산하로 변경이 되었다. 이전에는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이었다. 또 교직원이 포함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였고, 학생위원은 2명이상에서 2명으로 확정되었다. 부위원장에 대해서 여자 교수님이 좋다는 처음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현재 학생처장님께서는 위원회내에서 관심이 적으신 분이 교제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처음에 학생들이 제안했던 것이 법제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통하면서 많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처음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타 대학의 모범 사례로 남기를 바라는 학교측의 의도도 포함된 것 같다.

4. 성폭력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내에서 성폭력 위원회가 그나마 생길 수 있었던 시작은 지난 총여학생회 선배들의 노력의 결실과 함께 학교 특히 학생처(학생처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늘 얘기할 수 있는 학교측과 친분 및 관심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학생들의 노력도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지난 13대 총여학생회가 학교에 제안한 것은 학칙 제정이었다. 학칙 제정 가안에 있는 위원회는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학칙이 아닌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안하였다. 그래서 위원회의 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많은 한계점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위원회 자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에 나왔던 위원회의 규정안과 성폭력 학칙의 가안을 조합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우리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이 작업의 전개는 총여학생회내에 '성폭력 위원회 준비팀'을 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본다. 총여학생회 내부에서의 진행으로는 미약할 수 밖에 없는데 성폭력에 대한 경력을 가진 사람, 학교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논리 정연함을 가진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준비한 것이 위원회 내에서 교수님들과 상담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학교측에 완벽한 논리와 준비성,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학내에서 성폭력으로 피해받던 많은 여학생,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사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며 시립대학교에 있는 3주체 즉 교수, 교직원, 학생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 위원회의 규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 기뻐할 것 만은 아니다. 성폭력 위원회가 처음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도록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발생시 논의 과정에서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어 진다. 현재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세칙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다. 이는 외국 대학의 사례를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아주 지난한 작업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실질적인 세칙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98년도 1학기 동안에 성폭력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구성원이 4부류라는 것이다. 학생 중에서 남녀로 구분, 교수님도 남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는 교수와 학생으로 대처되기도 하고, 남과 여로 나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의 이 자리도 권력이라는 것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가장 한계였다. 또 이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진 위원이 없었다라는 사실이다. 개념에 대한 일정 정도 아니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모임을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위주의 상을 그리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준비 모임이 시립대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 내에서 늘 서로가 책임을 전가시키기에만 바빴다.

그래서 2학기에는 성폭력 위원회의 규정안을 알리는 작업과 성폭력이라는 것의 개념, 범위에 대한 논의와 홍보하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위원회가 앞으로 할 일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했듯이 세칙을 만들어 위원회의 모습을 완전하게 갖추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칙 제정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학칙 제정이라는 것을 위원회내에서 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규정안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현재는 위원회의 모습을 만들고 학교 내의 상황에 맞추어서 학칙제정 운동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와 학생이 처음으로 성폭력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회의 모습이 학내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큰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학교의 규정안을 국, 공립대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감사패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단지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각 대학에서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보탬과 힘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제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집행의 체계가 올바르게 확립되고 학칙 제정이라는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많은 여학생들은 성폭력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한 정말로 여성임이 즐거운 세상을 여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멀리서/ 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서울시립대학교 14대 총여학생회

<별첨 부록>

• 공고를 통해서 시대인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나 공청회는 아직 미정임.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학 내에서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성폭력의 의미)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을 뜻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성폭력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교수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 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위원은 2인으로 하되, 총학생회의 추천을 통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상근조교로 한다.

⑥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임시위원으로 대체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성폭력과 관련된 제반 대책의 수립 및 개선 방향 정립
3.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안 연구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성폭력사건이 신고되어 상담소에서 조사 후 위원장에게 보고가 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성폭력사건의 처리) ①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여학생상담실의 상근조교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성폭력사건의 조사방법·과정·처리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따로 둔다.

④ 위원회는 보고된 성폭력사건을 심의하여 그 처리방법을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9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대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칙)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지난 3차 모임에 제출한 것으로 많은 수정 작업이 필요함.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대한 조항

제1조 피해자 위주의 원칙 (사건 처리시 필요한 것)

성폭력 발생시 진행되는 처리 과정은 모두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비밀 준수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며 사건 전개시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심의, 의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일단 접수된 사건과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서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름을 빼고 가해자나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 때는 꼭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생명, 연령, 용모 및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성폭력 사건의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③ 사건 징계 과정은 물론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조 성폭력의 예방

학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시선으로 정의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교육의 대상은 당연히 교수, 교직원, 학생이 될 것이다. 이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집행 체계를 확립하거나 이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방 활동은 방법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제 4조 성폭력 발생시 처리 (일련의 과정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일련의 과정의 한 부분이다. 신고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제3자가 한 경우 모두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모든 신고

의 종합은 여학생 상담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수가 되면 바로 조사를 위한 모임이 바로 소집되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를 위한 모임은 교수, 상담실 선생님, 학생 대표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심의 시 피해자 위주로 판단되어야 하며 처벌 시 올바른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처벌할 때 현재의 규정안이 매우 미흡한데 좀 더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 때 반드시 피해자의 위주로 처벌 조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을 조항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발생이 되면 위원회를 자동 소집을 한다는 조항이나, 꼭 상담실이 아니더라도 학생회, 위원회 위원과 같은 곳에 접수된 신고를 상담실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신고와 접수

ㄱ. 신고인과 신고인 보호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사자나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또는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제 3자)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점들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ㄴ. 신고 절차(신고 방법)

신고 접수는 총여학생회, 학생생활 연구소, 여학생 상담실, 위원회 위원, 그 밖의 학생대표 기구, 지도 교수, 여학생부, 학과 학부장, 대학장, 대학 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등에 신고한다. 이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여학생 상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② 사건 발생시 자동 소집

사건이 발생하고 접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소집해야 한다는 것은 사건의 해결을 더 늦추는 것이고 가해자에게 더욱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므로 사건 발생 시 자동 소집이 될 수 있는 조항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조사 과정

성폭력 발생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교수, 교직원, 학생, 여학생 상담원이 모두 참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심의와 의결 : 처벌 규정(징계 내용)과 의결

: 처벌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성폭력 발생시 가해자의 처벌은 그 신분에 따라서 처벌하며 그 처벌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 처벌 규정은 피해자의 위주로 정해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는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그 처벌을 받는 내용이 다르므로 이것을 가해자의 신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 :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등/ 교수, 교직원: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등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경우 그 동조자에 대하여 징계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재교육,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단체에서의 일정 기간 봉사,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대자보, 언론 등을 통한 공개 사과, 금전적 피해 배상, 기존의 학칙상 처벌들(학생일 경우 제적, 무기정학, 유기 정학, 근신 등, 교수나 교직원일 경우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외부인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가해자가 속한 구성 단체와 접촉을 통한 징계 요구 등), 경고장 발송(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

덧붙여 가해자 측이 각종 보복을 획책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된 명백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징계 사항을 불이행하고, 특히 재범일 경우 등에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⑤ 공고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정한 지역에 공고한다. (가해자 이름 명시)

제 5조 적용 시한

적용 시한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본 위원회의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사한 제한 없이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예가 상당수를 차지함으로 시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고, 그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